인력 소개 계약서

주식 회사 ATTO (이하 갑이라 한다)와 테크노 브레인 주식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의뢰를 토대로 을이 행할 인력 소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갑은 을에게 인재 채용을 위하여 인력 소개를 의뢰한다.

제 2 조 (내용)

- 1. 갑은 을에 대하여 구인 의뢰에 적합하게, 직업 안정법 제 5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하고, 을은 이를 토대로 소개한다.
- 2. 을은 갑의 의뢰를 토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갑에게 소개한다.
- 3. 을은 갑의 필요한 조언을 실시하여 채용 전형을 지원(支援)한다.

제 3 조 (인력 소개료)

- 1. 갑은 을이 소개하는 인력을 채용 결정할 경우, 근로 기준법 제 15 조를 토대로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내정 통지서를 발행하고, 채용 결정의 결정 연봉의 35%을 을에게 지불한다.
- 2. 결정 연봉은 하기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월급제의 경우 월 보수 × 12 개월 + (여름 보너스 산정 기준액 + 동계 상여금 산정 기준액) 연봉제의 경우 연봉 액수

- 주 1) 월 보수는 통근 수당 이외의 수당 (주택 수당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한다.
- 주 2) 준비금 · 타겟 인센티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50 %를 결정 연봉에 포함한다. 그러나 성과 상여금 스톡 옵션 등 채용시점에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결정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4 조 (지급 방법 등)

전조의 인력 소개 수수료는 채용 결정자의 입사 일 다음달 말까지 을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 계좌로 송금하여 지불한다. 또한, 은행 송금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5 조 (기밀 유지)

-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인력 정보는 개인 정보에 대해 갑은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진다. 갑은 개인 정보를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삼자에게 공개, 사용,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개인 정보를 제 3 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2. 마찬가지로, 을은 본건에 관해 파악한 기업 정보에 대하여 기밀 유지 의무를 가진다. 을은 기업 정보를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것을 제 삼자에게 공개, 유출 또는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기업 정보를 제 3 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 3. 전 2 항의 규정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다.

제 6 조 (조기 퇴직)

1. 을이 갑에게 소개한 인력이, 입사 후 3 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한 경우, 을은

제 3 조에 정해진 인력 소개비의 반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단, 당해 인력의 조기 퇴직이 갑이을에게 인력 소개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갑은 인력 소개비의 반액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 2. 을은 갑 소정의 인사규정에 따라 입사 후 3 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하며, 을이 갑에게 소개한 인력이 당해 수습 기간 중 갑의 객관적인 업무 평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갑의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다른 인력을 소개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인력 소개비의 반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3. 본 조의 반환금은 갑이 을에게 해당 퇴직자가 퇴직했다고 통지하는 날의 익월 말까지 갑의 지정하는 금융 기관 계좌로 입금하면 결제, 은행 송금 수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양자의 협의를 통해 다른 채용 결정자에 드는 인력 소개 비용과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7 조 (인력 소개비 지급 예외)

- 1. 을이 갑에게 소개한 인력이 을이 추천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3 년 이내에 갑에게 지원한적이 있거나 갑이 면접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력을 을이 소개한 인력으로 인정하지아니한다.
- 2. 만약 을이 갑에게 소개한 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갑은 당해 인력과의 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지급받은 인력 소개비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 해지)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상대방에 서면에 의한 최고(催告)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계약체결 시 비용)

이 계약에 필요한 비용은 갑 / 을이 절반씩 부담한다.

제 10 조 (계약 기간 및 갱신)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 년이며, 갱신시기의 1 개월 이상 전에 서면 계약 종료의 통지가 없는 한 다시 1 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제 11 조 (협의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의문이 생긴 경우에는 갑을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제 12 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 사무소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상 본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문서 2 통을 작성, 양자 기명 날인 후, 갑 을이 각 1 통을 보관한다. (甲) 所在地:

社 名:

代表者

又は代理: (印)

人

(乙) 所 在 地 : 東京都品川区東五反田 1-13-12 COI 五反田ビル 5F

社 名 : テクノブレーン株式会社

代表者: 代表取締役社長 能勢賢太郎 (印)